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2
제15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8
제15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15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15
제15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21
제15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	25
제15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제1535호 :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36
제15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40

[규 칙]

제7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4
제7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4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8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

한다.

- 3.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민관협치 공론장”이란 협치중구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협치중구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중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협치중구 추진단 또는 협치중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의의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의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와 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와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회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회의는 민 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조(협치조정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9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회의가 권고한 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 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백서 발간 등)**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 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총칙 (제1조~제6조)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구민의 권리 등 규정
- 협치중구 회의 (제7조~ 16조)
  - 협치중구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 위원 임기 및 위촉해제, 의장의 직무, 회의개최에 관한 규정 등
- 민관협치 활성화 (제17조~ 23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백서발간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 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
-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 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
-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도심 관광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 지역경제 생태계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며, 관광의 부정적 현상으로 소음공해, 쓰레기 증가,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관광의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관광객과 관광지의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제10조).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수탁자의 선정)</b>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서울특별시 <b>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b>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④ (생략)</p>	<p><b>제7조(수탁자의 선정)</b> ①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 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여 도서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기여

2.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 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자 확대(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15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지원”이라 함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예·체 프로그램, 급·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라 함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안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다.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
  - 2. 정서적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
-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 소속 관계 공무원
4. 돌봄 시설의 관계자
5.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돌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학교 안과 밖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온종일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돌봄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제3조~제4조)
- 지원 사업 관련 사항(제5조~제6조)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제7조~제9조)
- 지역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제10조~제14조)
- 교육 및 워크숍, 지도·감독, 예산·결산, 포상 등(제15조~제19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육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④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의 지원·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사용료,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제14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자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간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융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자금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자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를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점검”을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사후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u>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 -----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2.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p> <p>3.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한다.</p> <p>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구청장의 책무) <u>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u></p> <p>1. ~ 3. (생략)</p> <p>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은 <u>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u> <u>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u> <u>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u></p>	<p>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 ----- ----- ----- ----- 받아야 한다.</p> <p>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 ----- 적합 여부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청장의 책무) ----- ----- <u>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 ① <u>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u> <u>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 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 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1조(사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 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p> <p>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인증기준)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설계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사후점검” 등의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2조).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사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5호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증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한부모가족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8조).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 확보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료수급권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접종일 현재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접수요원 (원무), 환자이송요원 중 서울시 접종지원 가능한 사람
  -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 다.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를 포함한다)
  -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근무자)
  -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근무자)
  - 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아.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 11.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제2조제1호마항의 대상자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7.1.부터 202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3조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가을철 코로나-19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전파의 사전적 차단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제1조)
- 접종대상자의 범위와 실시 기준 및 위탁 범위를 규정함 (제2조 ~ 제3조)
- 위탁계약 해지를 규정함(제4조)
- 예방접종 비용신청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제5조 ~ 제7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조례규정에 대한 준용(제9조)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출자·출연기관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p> <p>① (생략)</p> <p>②「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출자·출연기관이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20. 1. 1이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증구문화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 마련 및 향후 도서관 업무의 다양성과 다변화에 맞춰 도서관 관리·운영 기관의 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제외 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제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지급 및 용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간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용자사업과의 중복으로 자금의 존치 실익이 없어 본 규칙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지급 및 용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